

자치법규

선	기관 의 장
람	

구 보

● 자치법규

[입법예고]

제2024-405호 :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

[입법예고]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-405호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·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4년 4월 8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 및 대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」 제8조 대여신청시 구비서류에서 보증인의 인감증명 요구 항목 삭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추가

3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(참조 : 청소행정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http://www.junggu.seoul.kr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
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

나. 의견 제출사항

- 1)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 및 그 이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제출할 곳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청소행정과

(☎ 02-3396-5454, FAX : 02-3396-8754, E-mail : bmj1101@junggu.seoul.kr)

라.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전자메일 등 가능

붙임 1. 일부개정규칙안 1부.

- 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

**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
일부개정규칙안**

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제3호 중 “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”를 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대여신청시 구비서류)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보증인의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조 례 제12조제1항 해당자에 한함)</p> <p>4. (생 략)</p>	<p>제8조(대여신청시 구비서류)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 확인서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